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Working System for Forensic Agents

조민상*, 조현빈**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Min-Sang Cho(police01@bu.ac.kr)*, Hyun-Bin Jo(johyunbin@sch.ac.kr)**

요약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과학수사 | 근무제도 | 광역과학수사체제 | 경찰 | R&D |

Abstract

Areas of forensic have been used as a tool in many fields of police investigation, detective, such as research relating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spite it is failure to obtain a central role and status, forensic is nonetheless necessary.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and forensic activities, and in reviewing the level of support for actual condition of science and forensic investigations, and it has tried to find the problems.

Based on this,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s of the working system to explore whether it can improve the efficiencies of forensic activities from the realistic restrictions.

These days,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police forensic activities encounter is lack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on the arres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looking for realistic ways to improve efficiencies of forensic agents

First, changing the working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the command system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regional forensic system is require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ird, the system should improve forensic specialties. Fourth, the R&D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ed to improve the capability for forensic investigations.

■ keyword : | Forensic Science | Working System | Greater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 Police | R&D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상서교의 자료수집 보조 활동이 포함됨)

접수일자 : 2014년 12월 09일

수정일자 : 2015년 01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3월 05일

교신저자 : 조현빈, e-mail : johyunbin@sch.ac.kr

I. 서론

자연과학의 이론 및 전문기술을 범죄수사·사고·재난조사 등에 활용하여 민·형사 절차의 투명화 및 신속화에 기여하는 학문분야를 ‘법과학’이라 하고, 범죄수사에 법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과학수사라 한다[1].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되는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은 범죄수사 이외의 기타 경찰의 제 활동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1979년 미국의 Herman Goldstein은 기존에 높은 검거율의 유지, 범죄신고에 대한 대응시간의 단축 등을 강조하는 Reactive Policing의 대안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 Problem Oriented Policing)을 제시하였다. 범죄문제에 대한 사후진압보다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근본적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함으로써,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둔 Proactive Policing으로의 변화를 핵심으로 한다[2]. 유사한 맥락에서 1980년대에 등장한 환경범죄학은 특정지역에 범죄가 집중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범죄를 집중시키는 요인을 분석, 통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소위 Hot Spot Policing을 제시한 바 있다. 즉, Hot Spot으로 식별된 지역에 내재된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순찰력의 집중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POP 및 Hot Spot Policing 개념은 최근 Crime Mapping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기반으로, 범죄다발지역분석, 범죄위험 예측지역 및 집중순찰지역, CCTV설치장소의 선정은 물론, Profiling기법에도 응용되어 살인·강간 등 연쇄 강력범죄 수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은 경찰의 범죄수사 분야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경찰활동의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수사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는 경찰의 범죄수사 활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발전 등을 생각한다면 과학

수사의 중요성과 역할 증대는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의 실질적 적용과 활용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수사를 확대·발전시킬 이유로는 경찰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수반하여 범죄와 사고는 다양화·지능화·전문화·광역화·대형화되고 있다. 둘째, 사법환경의 변화로 증거중심,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으로 더욱 엄격한 경찰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 과학화로 범죄 또한 진화했기 때문에 범죄 수사 역시 진화하여야 하나 법률적·제도적·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는 경찰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다. 국민들의 정서 또한 범죄 관련 활동은 경찰이 모두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변화하는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고, 과학수사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인력·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인식만 하고 있을 뿐, 그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3].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과학수사 지원 수준을 인식하여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요원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과학수사의 개념

법과학(Forensic Science)과 과학수사 또는 범죄수사학(Criminalistics)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과학수사를 뒷받침하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총칭하여 법과학이라고 하며, 병리학, 독물학, 인류학, 치과학, 정신의학, 의문점 있는 증거자료, 반도학, 도구사용비교, 혈청학 등을 포함한다[4]. 역사

적으로 법과학의 창시자는 물적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오스트리아의 법관 한스 그로스(Hans Gross)이고, 방법론상 초기의 진보에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은 1910년 프랑스 리옹 경찰청에 과학연구실을 만든 에드몽 로카르드(Edmond Locard)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에서 감식업무를 병행하다가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어 법의학·생물학·약독물·문서감정·화학분석·범죄심리·교통공학분야는 국과수에서 감정을 하고, 지문·족흔적·거짓말탐지기·몽타주·CCTV관독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5].

범죄수사학은 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여러 과학분야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법·과학의 보편성 등 모든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범죄수사 또는 과학수사(Scientific Investigation)는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를 의미한다. 과학의 이용은 과학기술, 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이용을 말하며 과학적인 방법은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접목한 과학수사는 과학의 특성인 객관성과 확실성 및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로서 전통적인 진술과 신문위주의 수사에 대응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수사방법을 지칭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장비의 발전과 이를 이용한 수사는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 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6].

2. 과학기술 활용의 중요성

과학기술의 활용이 경찰수사과정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경찰의 범집행 환경이 인권보장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의 범죄수사과정에서 심문 등에 의한 자백 및 진술에 의존한 과거의 수사방식은 인권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입증이 어렵다. 과학수사는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강압적 수사방식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의 활용은 심문에 의한 자백,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확보

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공판단계에서는 사실인정의 객관화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증거의 사용으로 오판방지도 기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범집행은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범집행에 대한 무분별하고 비합리적 저항을 억제할 수 있다. 나아가 범집행의 적법성이 논란되는 사례에서, 명확한 판단자료의 제공은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을 통제하여 적법성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 과학수사 2대 원칙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과학수사 분야의 능률성,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과학수사요원 출동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1 2인 1조 출동의 원칙

‘2인 1조 출동의 원칙’이란 주·야간 2인 1조 출동원칙을 준수하되, 지구대에서 요청하는 절도사건 등에 대한 전체 건수 감식체제 또한 그대로 유지할 것을 말한다. 다만, 휴가·교육 등 과학수사팀원의 일시적인 부재로 2인 1조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4교대에서 3교대로 근무체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2 교육 미이수자 과학수사 금지의 원칙

‘교육 미이수자 과학수사 금지의 원칙’에 의하면, 사건현장 통제선 내의 현장에 접근하는 지방청 과학수사계장, 경찰서 팀장을 포함한 모든 과학수사요원은 과학수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현장 증거물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 관련 과정 중 ‘과학수사입문과정’, ‘과학수사과정’, ‘분야별 전문수사관과정’, ‘수사지휘과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과학수사요원에게만 현장출동 감식업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수사 2대 원칙은 과학수사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히 지켜져야 할 부분이

2011년 충북지방경찰청의 경우 현장감식이 필요한 사건은 모두 8,572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 과학수사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된 흥덕경찰서의 경우 현장감식 필요 사건은 모두 1,678건으로 과학수사요원 1인당 279.6건을 처리하여야하며 2인 1조의 팀으로 계산하면 1팀당 559.3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매일 팀별로 1.53건을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인력부족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의 확충은 한계를 보인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토대로 체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광역과학수사체제 분석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전국적 실시는 각급 경찰서마다 과학수사 인력의 부족과 과학수사 수요의 불균형을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요원의 집중적 운영 및 과학수사 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광역수사체제는 단순히 인력 및 과학수사역량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집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수사라는 정밀하고 세분화된 기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및 형사기능의 수단 내지 도구기능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기능의 운영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2.1 광역과학수사체제 도입관련 분석

다음은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에서 2012년 9월에 경찰청 고객센터 모니터센터를 통하여 광역과학수사체제 실시관련 설문조사의 결과이다.(전체 과학수사요원 919명 중 응답자 56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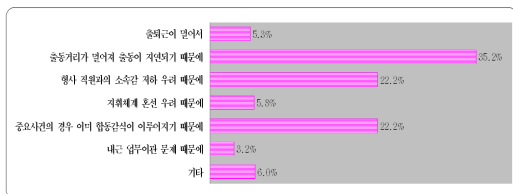


그림 1. 광역과학수사체제 도입의견[10]

광역과학수사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적극 찬성' 24.0%, '찬성' 18.8%, '보통' 12.6%, '반대' 27.7%, '적극반대' 16.9%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광역과학수사체제 도입을 찬성하는 '적극찬성'과 '찬성'은 42.8%, 반대하는 '적극반대'와 '반대'는 44.6%로 수치적인 차이는 있으나, 현재 광역과학수사체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학수사요원들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수치적인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할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동거리가 멀어져 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가 3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형사 직원과의 소속감 저하 우려 때문에'와 '중요사건의 경우 이미 합동감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22.2%, '지휘체계 혼선 우려 때문에'는 5.8%, '기타' 의견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2.2 과학수사의 개선사항 분석

과학수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응답은 '인원확보'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가 21.0%, '과학수사요원 교육' 16.1%, '필요한 장비 보급' 3.6%, '규정정비' 2.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과학수사라고 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현재의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던 간에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인력문제와 전문교육문제라고 현장근무요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업무현장에서 과학수사가 강조되고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과 제도 등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현장의 과학수사요원들은 지원을 절실히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근무방식의 변화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3. 광역과학수사체제 운영 분석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운영 후 2013년 2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에서 전국의 과학수사요원 중 554명을 대상으로 장점·단점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 실시 전의 조사결과대비 광역과학수사체제도입과 광역과학수사 2대원칙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1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장점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실시결과, 장점으로는 ‘야간 2인 1조 근무’가 43.1%로 가장 높았고, ‘종전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감식’ 13.5%, ‘내근업무(전산조회등) 이관’ 13.5%, ‘대국민 신뢰도 향상’ 10.1%, ‘동료와의 기법공유’ 7.5%, ‘인접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건분석 판단(정보교류)에 용이’ 5.2%, ‘3급지 경찰서 과학수사해택’ 2.6%, ‘다수 과수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 2.6%, ‘출동시간 단축으로 형사 및 지구대 환영’ 1.1%, ‘일하는 시간·쉬는 시간의 확실한 분리’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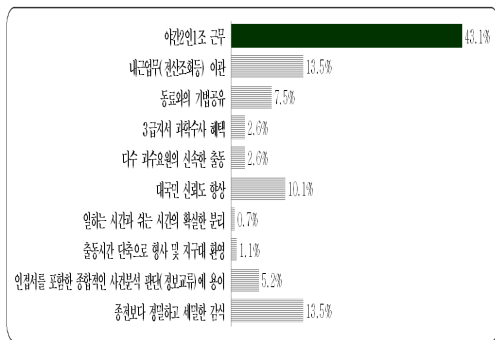


그림 2.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장점[11]

조사결과 ‘야간 2인 1조 근무’, ‘종전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감식’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난 것은 과학수사요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과학수사에 치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적으로 충실히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과학수사에 충실할 수 없었던 현실을 근무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3.2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인원부족’ 24.7%, ‘사무실 등 편의시설 부족’ 21.1%, ‘근무증가로 피로누적’ 10.7%, ‘형사들과의 유대 약화’ 9.7%, ‘출동시간 지연으로 민원야기 우려’ 9.4%, ‘인사발령에 대한 불안’ 8.7%, ‘증거물입고위치 혼선, 실험실부족 등 업무 인프라 부족’ 7.0%, ‘원거리 출퇴근’ 2.0%, ‘교육기회 부족’ 1.7%, ‘잦은 출동’ 1.0%, ‘조원과의 기법 및 의견차이’ 0.7%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장점과 마찬가지로 단점 역시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의 문제점들은 과학수사요원들의 근무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부분들이다. 사무실, 인사 불안, 형사들과의 유대 등의 문제는 그동안 과학수사라는 분야가 각급 경찰서의 수사과 및 형사과와 한 몸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운영체제의 변화에 그치지 말고 수사업무의 수단 내지 보조가 아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근무제도 효율화 방안

1. 근무체제의 변화

과학수사요원 근무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과학수사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족한 과학수사요원의 확보이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전국 과학수사요원은 1,083의 정원 중에서 1,075명이다. 전국 249개 경찰서로 산술 평균하면 경찰서당 4.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1급지, 2급지, 3급지 경찰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팀 2인 체제, 3교대제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1,494명의 과학수사요원이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광역과학수사체제 운영인력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경찰서에서 모든 종류의 범죄발생에 대비하여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가 수준의 과학수사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경제적이다.

그렇다면, 각급 경찰서의 지역수준이 아닌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 단위의 중앙수준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학수사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과학수사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그 구체적인 운영의 기본 주체는 지역수준이 아니라 중앙수준에서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

광역과학수사체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과학수사의 중·장기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경찰서 수사 또는 형사기능과 별도의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학수사요원을 현장에 임장시켜 현장감식업무 및 감점업무를 통제하는 주체는 각급 경찰서의 수사 또는 형사과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담당하여 과학수사기능을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의 관점에서만 객관적으로 현장업무를 판단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 범죄발생시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 단위의 과학수사기능의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과학수사 전문성 지원을 위하여 과학수사요원의 투입범위, 과학수사 감식 요청사항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별도의 지휘체계 구축은 예산·시설·장비·인력 등의 조직관리 차원의 별도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과학수사 기능에서 분석·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기능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과학수사경과의 신설

경찰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를 분리하여 별도의 선발·승진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 16,638명의 수사경과 인력을 최초 선발하여 시작된 제도이다. 경과 및 특기에는 경과를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해양경과,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사경과 및 보안경과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

수사경과는 기타의 경찰업무 기능과 구분되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분리된 것이나, 현재 수사업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수사기능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과학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경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 인사운영규칙에 명시된 과학수사 인력 선발기준상의 가산점 인정범위는 과학수사계열, 생물·화학·화공계열, 물리학계열, 기계공학계열, 전기·전자공학계열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수사 분야와의 차별화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의 발전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과학수사 특기제도 개선

경찰은 경과제도와 함께 경찰 업무의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경위, 경감, 경정을 대상으로 일반특기제도와 전문특기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일반특기는 기획·감사·경무·생활안전·형사·수사·교통·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 특기로 분류하며, 전문특기는 형사, 조사, 과학수사, 정보관리, 정보분석, 보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 외사 및 기술(정보통신·항공·해양)특기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특기는 형사전문특기, 조사전문특기, 과학수사 전문특기, 정보관리 전문특기, 정보분석 전문특기, 보안수사공작 전문특기, 보안수사신문 전문특기, 외사전문특기, 기술 전문특기 등 모두 9개의 특기로 분류되어 있다(「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일반특기는 수사와 형사특기로 구분될 뿐 과학수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문특기에는 과학수사전문특기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전문특기에 과학수사기능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수사기능 중에서도 과학수사기능이 좀 더 세밀한 고도의 전문분야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특기가 화재, 지문, 발자국 기타의 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에 관한 직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과학수사 일반 특기가 먼저 구분되고, 이에 따른 전문특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경과와 특기제도가 과학수사기능만을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과학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전 경찰관은 과학수사 경과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과학수사요원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감정 및 감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계층인 경위, 경감, 경정급에게 과학수사 전문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광역과학수사체제를 경찰조직 내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과학수사 R&D 조직 구축

경찰의 과학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의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과학수사센터의 역할 및 조직으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 또는 형사업무를 지원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과학수사 관련 감정 및 연구 기능, 과학수사 관련 교육 기능을 경찰청에서 직접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범죄발생시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경찰의 수사 및 형사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경찰조직에 존재하여야만 과학수사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조직에 과학수사 관련 전문 감정 및 연구기능을 설치하는 방안은 첫째, 경찰청 내에 과학수사관련 R&D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직형태가 갖는 장점은 조직 편제 상 별도의 R&D 기관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R&D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직 설립을 위한 별도의 법령제정이나 예산확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경찰의 경우, 조직 내 R&D 기획총괄부서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법제정이

나 경찰법 개정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찰청 및 그 소속직제”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수준에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내 부서는 현재의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와 마찬가지로 특기 기능의 하부 조직으로서 위치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획기능은 가능하나 직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려하기는 어렵다. 둘째, 경찰청 직할의 과학수사 R&D 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찰청 내에 과학수사 전문 부속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일선 수사행사 실무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수사기능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광역과학수사체제를 운영하더라도 경찰청 내지 각 지방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전문적 지식을 직접,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직제(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V. 결론

현대사회는 혼돈의 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조직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내·외부의 환경적 요인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2].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환경의 변화 및 신종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범죄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환경은 증거중심,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경찰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크게 향상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기본적으로 과학수사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광역과학수사체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담당 업무자 및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은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실적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이 바당되는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이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전체적인 인식 조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한 범위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현재 과학수사의 지원 및 제도와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조병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7호, pp.1191-1228, 2009.
 [2] G. Herman, *Problem Oriented Policing*, McGraw Hill, 1990.
 [3] 정덕영,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권, pp.219-245, 2004.

[4] 정덕영,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권, pp.219-245, 2004.
 [5] http://www.kcsi.go.kr/kcsi_scientific
 [6]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8.
 [7]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8]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9]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10]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11]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12] 정덕영,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경찰의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pp.109-116, 2006.

저 자 소 개

조 민 상(Min-Sang Cho)

정회원



- 2005년도 2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사)
- 2009년도 2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3년도 2월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관심분야> : 경찰조직, 경찰인사, 위기관리, 조직행동

조 현 빈(Hyun-Bin Jo)

정회원



- 1999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1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석사)
- 2004년 8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범죄, 위기관리, 경찰조직, 경찰인사